## 한・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82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·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 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한・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·아프리카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	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
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			
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3. 미성년자</u>	3. 18세 미만인 사람		